

보도시점 2024. 5. 27.(월) 12:00 (2024. 5. 28.(화) 조간)

분쟁해결을 넘어 70 신뢰사회 구축으로
1954 ~ 2024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분쟁의 새로운 해결방식 일환으로 영상심문회의 활용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김태기)는 2023. 12월 영상 심문회의 시스템 구축을 시작으로 관련 매뉴얼 준비 등을 마치고, 2024. 6월부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심판사건의 영상 심문회의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를 계기로 2021. 7월경부터 미국, 영국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100여 개 국가가 영상재판을 이용하고, 우리 나라 법원도 모든 재판부에 영상법정을 개설하고 있는바,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분쟁해결 방식이 세계적 추세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디지털 사법절차라는 변화의 흐름 속에 발빠르게 대처하여, 행정기관으로는 국내 최초로 전국적 규모의 영상 심판제도를 도입하였다.

우선 2024. 6월부터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한 재심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영상으로 심문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되며, 7월에는 서울·부산 지방노동위원회의 재심사건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향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중앙노동위원회가 실시하는 영상 심문회의는 당사자들의 장거리 이동 불편을 해소하는 일반적인 장점뿐만 아니라 특히 근로자 보호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피해자 등의 보호조치를 포함한다.

그간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피해자 등이 심문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보호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가해자와의 완전한 분리가 불가능하여 진술 시 심리적 불안을 느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영상 심문회의를 활용하여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피해자 등이 분리심문을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근로자들이 심문회의 과정에서 안정적인 심리상태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분리심문 당사자 등이 분쟁의 조기 해결에 합의할 경우 서로 대면하지 않고도 화해가 성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향후 이러한 근로자 보호조치는 중노위 재심사건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가능할 수 있게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채택된 증인이 장거리 이동 불편으로 참석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장 소재지에 위치한 가까운 영상심판정에 출석하여 증인 심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미국 등의 경험을 보면, 성희롱·괴롭힘 등과 같이 심리적 요소가 강한 사건들은 영상 심문회의를 통해 보다 차분하게 대화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우리도 이와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중앙노동위원회 심판2과	책임자	과 장	임선정	(044-202-8251)
		담당자	조사관	이석준	(044-202-8252)

